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67

발의연월일: 2025. 4. 16.

발 의 자:윤재옥ㆍ김상훈ㆍ김정재

김기웅 · 최수진 · 정희용

김민전 · 서천호 · 서지영

김소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현장에서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 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하지만 건설현장에서의 마약, 음주운전 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이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개정하고, 약물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 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40조 등).

법률 제 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호 중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8호 또는 제9호"를 "제8호, 제9호 또는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를 "술에 취한 상태"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로서 정 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 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

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 한 고용주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제41조제17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	제27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
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격사유)
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기	
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8조제1호부터 <u>제7호</u> 까지	5 <u>제8호</u>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	
나지 아니하였거나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
소・정지) 시장・군수 또는 구	소·정지)
청장은 건설기계조종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	
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기계조	

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 6. (생략)
- 7.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또는 과로 · 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신 설>

8. • 9. (생략)

제40조(벌칙) <신 설>

<u>স</u>
8호, 제9호 또는 제10호
1. ~ 6. (현행과 같음)
7
<u>술에 취한 상태</u>

- 8.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로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 9.·10. (현행 제8호 및 제9호 와 같음)
-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 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신 설>

(생 략)

-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1. ~ 16. (생략)

<u>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u> 자

-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1.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설기계 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 ③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41조(벌칙)	

-----.

1. ~ 16. (현행과 같음)

17. 제2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삭 제>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 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와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 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 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 18. • 19. (생략)

18. • 19. (현행과 같음)